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명시 및 국가의 비용 보조 등 》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01호)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40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96호)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46호)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526호)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0호)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980호)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11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14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명시 및 국가의 비용 보조(강선우의원안)	14
2.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강 선 우 의 원 안)	20
3.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는 피해아동 등 취학 근거 마련(김미애의원안)	28
4. 보호조치 관련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조정 역할 부여 등(김남희의원안)	35
5.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 (정을호의원안)	49
6.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설정 등(강경숙의원안)	55
7. 일시보호조치 대상 기준을 ‘보호자’로 변경 등(이성권의원안)	65
8.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등 교육 포함 등(김미애의원안)	71
9. 가정위탁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등(이수진의원안)	77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6인
- (2) 제 안 일 : 2025. 11. 7.
- (3) 회 부 일 : 2025. 11.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2.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4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1. 10.
- (3) 회 부 일 : 2025. 11.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3.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29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14.
- (3) 회 부 일 : 2025. 11.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는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취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우 이 같은 전학이 사실상 불가함.

이에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4.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44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1. 20.

(3) 회 부 일 : 2025. 11. 2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인력 등 보호 조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에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보호 조치에 필요한 시설·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시·군·구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가정위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9조 및 제48조).

5.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5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을호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5.
- (3) 회 부 일 : 2025. 1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및 심리검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적 치료,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청년에 대한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심리상담 지원은 인당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 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지원청년의 경우 일반 청년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우울감과 무기력이 나타나고 있어 심리정서지원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자립지원청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6.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6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7.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98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성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8.

(3) 회 부 일 : 2025. 12.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 등에 위탁하는 등의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일시보호조치의 대상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컨대 형제인 경우 형이 부모의 반복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 되는 경우에도 동생은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원가정에 남아있다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아닌 보호자에 두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6항제1호).

8.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3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한 뒤 기초적인 법률·금융·경제 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자립지원 시 해당 분야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취업 지원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부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9.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6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12. 29.
- (3) 회 부 일 : 2025. 12.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보호조치의 하나로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가정위탁을 규정하고 있음. 가정위탁보호는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별적 상황 및 기질에 맞게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보호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확대 시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채널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Ⅱ. 검토 의견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명시 및 국가의 비용 보조 (강선우의원안 제22조제4항 후단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⑤ ~ ⑦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이 경우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비용 보조) (생략)	제59조(비용 보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 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개정안은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 시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22조제3항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지자체장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5년 6월 기준 229개 시·군·구에 892명이 배치되어 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18	62	45	67	22	26	30	4	19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40	26	48	43	47	53	56	12	892

* 일부 지역에 배치된 조사·판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외, 시·군·구 인원 기준으로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의심사례 50건당 1명씩 배치하도록 권고¹⁾하고 있음.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도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제주 등 8곳임.

<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

연번	시도명	시·군·구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25.6.)	최근 3년간 평균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22~'24)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1	서울	118	6,287	53.28
2	부산	62	2,930	47.26
3	대구	45	1,766	39.24
4	인천	67	3,463	51.69
5	광주	22	855	38.86
6	대전	26	1,582	60.85
7	울산	30	1,950	65.01
8	세종	4	298	74.50
9	경기	193	12,726	65.94
10	강원	40	1,462	36.56
11	충북	26	1,387	53.36
12	충남	48	2,143	44.65
13	전북	43	1,796	41.78
14	전남	47	1,842	39.20
15	경북	53	1,953	36.85
16	경남	56	2,542	45.40
17	제주	12	815	67.92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미달하는 시·도가 17개 중 8개로 거의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부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1) 2021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과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사단법인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1인당 적정 담당 건수가 약 50건(단거리 지역 연간 52.5건, 장거리 지역 연간 44.7건)으로 산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사례관리 건수 50건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도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함.

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 제59조제2항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6.6개월에 그치는 실정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자체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 연수('25.6월 기준) >

(단위: 개월)

시·도	평균 근속 연수	시·도	평균 근속 연수
서울	16.08	강원	10.80
부산	16.81	충북	12.38
대구	20.06	충남	18.60
인천	12.61	전북	18.33
광주	18.32	전남	17.04
대전	23.77	경북	14.70
울산	15.15	경남	8.23
세종	16.70	제주	19.67
경기	20.20	전국	16.64

자료: 보건복지부

주: 지방자치단체 취합자료를 재가공한 것으로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음

- 유사 입법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제4항)에서는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④ 국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청은 실효적인 아동 보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아동 학대 발생 건수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별 상시 대응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충분한 인력 증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강선우의원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 권한 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4(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된 사람

현행	개정안
<신설>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 3. 아동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현행	개정안
	<u>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u>

나. 주요 검토 사항

- 보건복지부의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2021년 37,605건으로 정점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여 2024년 24,492건이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2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50건, 2023년 44건, 2024년 30건임. 다만,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으로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문제가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음²⁾.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일반 통계 >

(단위: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신고 건수	42,251	53,932	46,103	48,522	50,242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¹⁾	38,929	52,083	44,531	45,771	47,096
아동학대 판단 건수 ²⁾	30,905	37,605	27,971	25,739	24,492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 건수 ³⁾	43	40	50	44	30

* 1)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 처리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

2) 아동학대 판단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

3)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 건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현황 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된 건수

* 자료: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장기적인 트라우마도 남기게 될 수 있는데, 아동학대로 인한 가장 중대한 피해인 아동의 사망 등 중대한 아동학대사건이 개별적 사건에 따라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된 후 사후적인 대책 마련 수준에 그칠 뿐 이에 대한 공적 조사 체계가 미흡하며, 사건의 원인과 문제를 충분히 진단한 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방지체계의 마련으로 나아가

2)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김선민의원실 보도자료: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소위 라면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의 경우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았음에도 행복e음시스템에는 ‘일반 사망’으로 입력되어 있었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례들이 지적되었음.

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³⁾.

- 그간 국회와 학계, 아동관련 단체의 주도로 2014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 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와 2017년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모두 민간단체들이 조사를 주도한 것으로 충분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었고,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⁴⁾.
- 정부 또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여러 차례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와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에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 등 >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 아동학대 관련 내용 -

- (대응체계) 학대조사 공공화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 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문 사례관리 기관으로 개편
- (전수조사) 만3세 전수조사 연 1회 실시(’19~)
- (징계권)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또는 한계 설정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월)

- (정보연계) 지역별 정보연계협의체 구성하여 학교 등 위리아동 정보 공유
- (대응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 지자체 배치 ’22→ ’21년 단축
- (보호) 학대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 (단계별 실효성) 대응인력 출입범위 확대, 사례관리 거부 시 제재규정 신설 등

3) 소라미,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진상조사의 필요성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2호, 2021. 8, p.160.

4) 정선욱·강지영·김진숙·이세원·정선영,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3호, 2022, pp.210~211: <이서현보고서>는 남인순의원을 위원장으로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 관련 단체, 법학과 변호사, 사건 발생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유치원, 학교, 진료 의사 등 24곳의 기관과 개인을 조사하였고, <은비보고서>는 남인순의원·김삼화의원·금태섭의원을 위원장으로 법률 및 변호사 관련 단체, 미혼모 및 한부모 관련 단체, 입양인 관련 단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월)

- (초기대응) 교육 확대·지침 마련 등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 (대응인력) 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의 조속한 배치, 업무여건 개선(조사차량 등)
- (분리보호) 쉼터 확충, 일시보호체계 강화로 차질 없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 (인식개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언, 대국민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 (입양) 입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21.8월)

- (발굴) 위기아동 발굴·사례관리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 위기 포착
- (대응체계) 진술부담 완화를 위한 협업, 분리보호 시 학습권 보장,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 등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 (인식개선) 보편적 부모교육 제공 및 '긍정 양육 129원칙' 확산
- (인프라) 인력(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지속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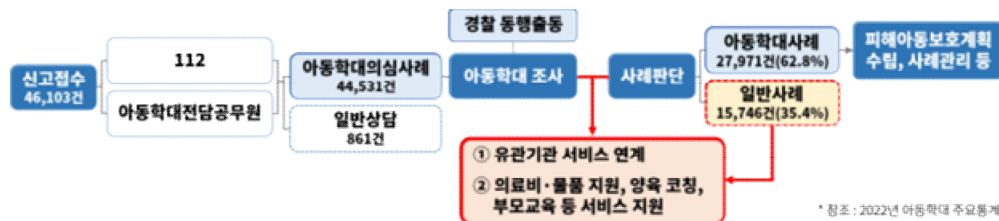
□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3.4월)

- (예방)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 정보 연계 강화 등 촘촘한 위기아동 발굴 추진,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활성화
- (대응) 아동학대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아동 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등) 강화 등

□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24.4월 ~)

- (목적) 아동학대 판단 전 또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일반사례")한 때 에도 선제적으로 대상 아동·가정에 청소, 물품, 교육·상담 등 지원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 특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범령, 관행,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바⁵⁾,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여

5)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으로 가정폭력, 경제문제(무직, 빈곤, 감당 못할 부채), 범죄경력, 불안정한 혼인 형태, 정신병력(우울증, 자해 및 자살 시도, 알코올 문제), 불우한 어린 시절(피학대경험, 가정폭력, 빈곤 등), 지지체계 부족 등이 지적됨(강현아 외 5,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유형 및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제 68호, 2019).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이를 통해 마련된 개선책은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중대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 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중대아동학대사건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 다만,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 및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함에 있어 심의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 등에 대한 면담, 형사사법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 1. 15.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 아동복지법 대안의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사례 분석 -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견 청취 - 지자체장, 수사기관장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심의위원회 구성	현행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0조)에 특별위원회로 설치 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에 관한 사항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건 분석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 형사사법정보의 수집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별도로 둘 필요 등을 반영한 유사한 취지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는 피해아동 등 취학 근거 마련(김미애의원안 제29조제7항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교육감 등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생략) <u><신설></u>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제6항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지원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친권자등”이라 한다)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로서 친권자등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u>

현행	개정안
⑦ (생략)	<u>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u> <u>이 경우 취학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⑧ (현행 제7항과 같음)</u>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제6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⁶⁾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는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⑤ (생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편, 초등학생의 전학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는 “초등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학생의 친권자에 대한 법원에의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초등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 ⑤ (생략) ⑥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2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⑧ 초등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6)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⑨ 초등학교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 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단서 생략)

② ~ ⑤ (생략)

⑥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⑦ (생략)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④ (생략)

⑤ 제73조제6항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한 후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령」에 의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지자체장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전학 등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더라도,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전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없더라도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의 목적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인 만큼, 학대 가해자일 수 있는 보호자의 동의를 전학 요건으로 한다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하여, 학대피해아동이 전학을 통하여

가해자와 분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도 있음(전주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나8231 판결).

□ 참고로, 전학 사실 등을 가해자인 부모에게까지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간 사례⁷⁾는 매년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부모 미통지 전학 사례 해당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 >

(단위: 명)

교육청	부모 미통지 전학 사례 해당 아동학대 피해 학생 수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 1학기
서울	74	47	41	24
부산	26	37	31	24
대구	37	20	15	14
인천	17	36	29	19
광주	29	28	20	5
대전	6	9	8	8
울산	14	30	16	12
세종	2	4	2	1
경기	76	105	103	66
강원	22	14	25	15
충북	19	20	30	10
충남	43	18	13	17
전북	3	25	26	16
전남	16	34	20	20
경북	55	20	34	18
경남	76	87	94	32
제주	26	23	11	10
합계	541	557	518	311

출처: 진선미의원실, 2025. 10. 4. 보도자료

7)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례는 현재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전학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중·고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경우 학대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령」보다 「아동복지법령」의 취지를 우선하여 전학이 행하여진 사례라고 설명함.

- 다만, 금번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의 「초·중등교육법령」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교육부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4. 보호조치 관련 시·도지사의 시·군·구 간 조정 역할 부여 등 (김남희의원안 제15조제8항·제9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① 시·도지사가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설·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인접 시·군·구 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8항 신설), ② 국가가 가정위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15조제9항 신설), ③ 지자체가 아동의 후견인 선임·변경을 청구할 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지자체의 후견사무 비용보조 근거를 규정하고(안 제19조), ④ 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48조제6항제7호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호조치) ① ~ ⑦ (생략) <u><신 설></u>	제15조(보호조치)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접 시·군·구에서 제1항제3호부터 제6호</u>

<신 설>

⑧ ~ ⑩ (생 략)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
·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까지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제1항제3호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 ⑫ (현행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⑬ -----

-----제11항-----
-----제12항-----

-----.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⑤ (생략)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설>

②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6. (현행과 같음)
7.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

7. (생략)	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에 대한 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청 나.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 다. 제21조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 8. (현행 제7호와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먼저,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력이 부족하여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접 시·군·구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제8항 신설).
- 현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주체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모두 포함하는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을 하는 일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⑪ (생략)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발견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토대로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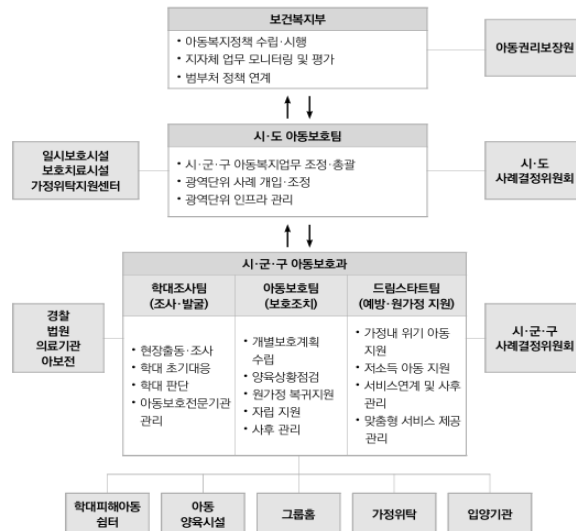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실태조사 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 ⑤ (생략)

< 아동보호 추진체계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 2024년 말 기준 아동생활시설 지역별 현황 및 편차를 살펴 보면, 보호대상아동 당 시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0.116개소), 가장 적은 곳은 경북(0.041개소)이고, 보호대상아동 당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0.92명), 경남(0.64명)으로 조사되는 등 시·군·구 관할 구역별로 시설·인력 등의 보호 자원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아동시설 편차 현황 >

(‘24년 말 기준, 단위 : 개소수,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보호대상아동 1인당 시설수	0.053	0.056	0.051	0.050	0.080	0.062	0.067	0.050	0.116
보호대상아동 1인당 종사자수	0.86	0.73	0.73	0.86	0.82	0.80	0.76	0.85	0.8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호대상아동 1인당 시설수	0.080	0.067	0.065	0.084	0.059	0.041	0.059	0.044	
보호대상아동 1인당 종사자수	0.78	0.82	0.75	0.81	0.75	0.67	0.64	0.92	

□ 첫째, 개정안에서는 인접 시·군·구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 간 보호대상아동 관련 인력·시설 간 편차로 인하여 아동보호체계 초기 단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광역 시·도 단위의 조정·총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한편, 최근 아동보호대상 사례 이관 현황을 보면 타 시·도간 이동도 상당한바, 이러한 현상을 개정안에 반영할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 아동보호대상 사례 이관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	2025년
보호대상 아동수(명)	21,491명	21,291명	20,655명	20,127명
타 시·도 간 이동	1,074	915	802	746
시·도 내 이동	1,326	1,836	1,709	1,624

※ 출처: 행복e음(‘25.12.19.자료 추출, 보호대상아동 중 해당연도에 사례이관 등록 완료된 경우, 중복사례 이관 포함)

* 연령도래·사후관리 등 종결된 아동 제외(25세 초과 포함)

* (사례이관 사유) 보호결정, 보호변경, 보호종결, 사후관리 중 전출 등

- 둘째, 현행법상 ‘보호조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소속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의 준용과 함께, 시·도가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보호대상아동 발생, 보호인프라 현황 등을 시·도와 공유할 수 있는 절차, 시·도가 개입하여 적합한 보호조치를 조정할 경우 구체적 후속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해 보임.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가정위탁보호 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5조제9항).

- 가정위탁보호 조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명시로 국가·지방사무 혼재에 따른 지역별 지원 격차 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가정위탁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매년 35~40% 수준이나

아동보호의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를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음.

< 2023 ~ 2024 보호조치 유형 >

(단위: 명,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형 보호			
		소계	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	기타	소계	가정위탁	입양대상아동	일시보호
'24	1,978	1,126 (6.9)	474 (24.0)	0 0.0	15 (0.8)	225 (11.4)	373 (18.9)	39 (2.0)	852 (43.1)	707 (35.7)	123 (6.2)	22 (1.1)
'23	2,054	1,067 (51.9)	524 (25.5)	-	13 (0.6)	222 (10.8)	266 (13.0)	42 (2.0)	987 (48.1)	783 (38.1)	162 (7.9)	42 (2.0)

< 2024년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24.12월말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위탁보호 현황	7,637	9,408	6,553	8,167	771	875	303	354	10	12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정부도 2025. 12. 26.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던 가정위탁 제도로 국가 차원 관리체제로 개편하기로 하였음.

< 가정위탁 국가·지방사무 구분 >

구분	지원내용	구체적 내용	개편방향
지방이양	매월 양육보조금 지원	지자체에 지원금액 권고 (초등이하 34만원/ 중등 45만원/ 고등 56만원)	「아동복지법」 하위법령에 권고기준 준수의무 부여 ※ 권고기준을 넘는 지원은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규정

	책정지원·사례관리	시·도 가정위탁운영지원센터 운영(18개소)	-
국가사업 (서울 4:6, 지방 7:3)	<u>생계급여 지원</u>	월 76만원 지급(1인가구 기초생계급여 자격 준용)	-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전문위탁가정 월 100만원 지급	-
	심리치료 지원	검사비 1회 20만원, 치료비 월 20만원 지원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	-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동 규정은 현행법상 비용 보조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 59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다음,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선임 청구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후견인 후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복지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 미성년후견인은 아동이 성년에 이르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등 보호조치 종료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친권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무가 부여되고, 「치매관리법」 등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 등을 살펴 볼 때 개정안 제19조제4항에서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현재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에게 후견활동비(월 20만원)를 지원하고 있음.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위탁아동 후견인 선임·활동지원사업’을 통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후견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⁸⁾하여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구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공공후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특히 위탁부모 등 양육자가 고령 등으로 후견사무 수행이 어려운

8) 2016년부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현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하여 수행함.

경우, 아동에게 전문적 지원 욕구(채무, 상속 등)나 특수 욕구(정신 장애 등)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학대, 방임,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실시하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지자체장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심판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바, 금번 개정안과 유사한 체계라 볼 수 있음.

< 공공후견인 제도 >

- 2023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 아동복지·법률전문가 등 대상으로 아동권리보장우너지 공공후견인 교육 및 후보자 양성
- 공공후견인 연계가 필요한 아동 발굴 시, 시·군·구에서 보장원에 공공후견인 추천 의뢰
-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후견인 후보군에서 적절한 후보를 추천, 시·군·구청장이 보장원의 법률 지원을 받아 법원에 선임 신청

- 다만, 후견인 후견사무 수행 비용 보조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비용 보조를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59조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청, 후견인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법원 심리과정에서의 보조인 선임’을 추가하려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 봄(안 제48조제6항제7호 신설).
- 후견인 선임 청구 등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바, 2025. 12. 30.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도 유사한 취지가 반영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금번 개정안	2025. 12. 30. 법률 제21261호, 개정 「아동복지법」(시행 2026. 7. 1.)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요청 나.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 다. 제21조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	제20조의3(후견인 선임 지원 등) ①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특히 금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후견인 선임 관련 등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중심 아동보호체계에 서 초기보호단계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광역 시·도의 행

정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5.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강화(정을호의원안 제35조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규정된 심리상담 지원을 보호대
상아동, 학대피해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으로 확대
하면서,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5조의2(심리상담 지원)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 피해아동 및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 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하 는 상담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 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	제38조(자립지원) ① ----- ----- -----

현행	개정안
설 폐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u>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u> 6. (생 략) ②·③ (생 략)	-----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복지법」은 2025. 4. 개정을 통하여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명문화하였음.

- 이러한 상담 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⁹⁾이 수행하고, 2025년 1분기¹⁰⁾부터 3분기까지 자립지원 전담기관 대면상담은 14,318건으로 나타남.

< 2025년 1~3분기 자립지원전담기관 대면상담실적 >

(단위: 건)

구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¹¹⁾ (상담, 건)
서울	1,909
부산	1222
대구	931
인천	1,119
광주	553
대전	1,327
울산	54
세종	72
경기	2,083
강원	96
충북	163
충남	881
전북	1,081
전남	914
경북	520
경남	1,131
제주	262
합계	14,318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현재 월 1회 정도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대상자에 대

9)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아동복지법」에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지원’이 명시된 것은 2025년 4월부터이나, 그 이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상담지원은 실시되고 있었음.

11) 이는 현행법 제38조제1항제5호(제1호도 간접적 관련)에 근거하여 월 1회 이상 주로 ‘상담’을 수행하는 활동임.

한 상담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심리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한편, 개정안은 기존 자립지원 대상자 외에 학대피해아동에게도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화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도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게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아동복지법」 제29조 등).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이러한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중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은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

(단위 : 회, %)

구 분	아 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행위자 제외)	
상담	592,310	(68.5)	464,139	(74.7)	261,332	(76.0)
의료지원	4,178	(0.5)	894	(0.1)	539	(0.2)
심리치료지원	68,135	(7.9)	34,045	(5.5)	19,656	(5.7)
가족기능강화	101,176	(11.7)	43,803	(7.0)	50,287	(14.6)
학습 및 보호지원	5,785	(0.7)	778	(0.1)	409	(0.1)
사건처리지원	36,041	(4.2)	41,165	(6.6)	3,291	(1.0)
행위자수탁프로그램	703	(0.1)	31,008	(5.0)	708	(0.2)
피해아동수탁프로그램	57	(0.0)	128	(0.0)	9	(0.0)
기타	56,607	(6.5)	5,428	(0.9)	7,782	(2.3)
계	864,992	(100.0)	621,388	(100.0)	344,013	(100.0)

* 출처: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 아울러,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도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도 지자체¹²⁾에서 보호조치 전, 보호기간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담 등을 포함한 지원이 수행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

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 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⑦ ~ ⑪ (생략)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이러한 보호대상아동,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합·강화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심신 형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현재 심리상담 지원은 대상자별 전담기관에서 수행되면서 각 대상자별 특성의 차이와 그에 따른 심리상담 이외의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심리상담만을 전담하는 별도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호대상아동, 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각각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대상자별 전담 기관에서 업무 수행 중으로, 개정안과 같이 제한 없는 심리상담 지원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각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거나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리상담과 관련한 통합적 별도 관리 체계 마련은 장기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구체적 업무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음.

6.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설정 등(강경숙 의원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가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② (생략) <u><신설></u>	제38조(자립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38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 -----

현행	개정안
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략)	----- ----- ----- -----. <u>이 경우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복지법」 제3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 등의 지원,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급, 자산형성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③ (생략)

- 첫째, 개정안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립지원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하여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는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 중임.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서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영역 >

영역	일반적 특성	건강	심리 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경제	자립지원 서비스
주요 문항	성별, 연령, 보호유형, 종료유형	질병경험, 건강상태	삶의만족도, 자살생각, 대처방법	부모유무, 지지체계	주거유형, 주거비	교육수준, 학비	취업상태, 소득자산	지원욕구, 정책만족도

자료: 보건복지부

-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강·심리·고용 등 영역에서 18세 연령 도래 후 바로 보호조치가 종료¹³⁾된 아동보다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¹⁴⁾이 더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준비청년이

13)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보호연장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도 제시되었음.

□ 개정안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 파악하여 이를 자립지원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의미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둘째, 개정안은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먼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구체적으로¹⁵⁾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①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②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¹⁶⁾씩 지급되고 있음.

14)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5)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2. (생략)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9) 보호종료 2년 이내 → ('20) 보호종료 3년 이내 → ('21.8.) 보호종료 5년 이내로 확대됨.

16)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에서 2022년 8월 월 35만원, 2023년 1월 월 40만원, 20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확대되어 옴.

□ 개정안은 국가가 이러한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항시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 담보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자립수당은 매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책 대상자의 수요, 재정 여건, 물가 수준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다음, 자립정착금은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¹⁷⁾,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지급¹⁸⁾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는 자립정착금이 식비(28.9%), 주거관리비(27.7%), 저축·보험(9.7%), 교육(9.0%) 순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후 어려움은 주거 문제 26.9%, 경제 문제 23.2%, 취업 정보·기술·자격 부족 17.9%로, 보호종료 후 필요한 서비스는 경제적 지원(68.2%), 주거지원(20.2%)이었으며, 2023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취업자 비율은 52.4%로 20~29세 청년 고용률 63.4%에 비해 낮은 수준인 등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은 현실임.

< 자립정착금 개요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 (대상)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전체,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의 경우 만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다만 지자체 판단 하에) |
|---|

17)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으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나, 2024. 2. 9. 시행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함.

18) 보호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나, 지자체 판단 하에 지급이 가능함.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 (지원내용)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에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권고('05년 지방이양)
○ (추진 경과)
- (1993년) 아동복지사업으로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 시작
* 자립정착금 100만원 지급(중앙보조율 50%, 지자체별 100~300만원으로 상이)
- (2005년)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2012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법적 근거규정 마련(제38조)
- (2017년)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 통해 최소 500만원 이상 지급 권고
-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등 과제를 포함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1. 7.), 자립수당·정착금 지급 근거 신설(법 제38조제1항제1호의2, '21.12.)
- (2022년) '22년 1인당 자립정착금 최소 800만원 이상 권고
-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통해 지자체 자립정착금 권고액 인상(800만원→1,000만원 이상)
* 지방재정 여건 및 예산 확보 준비 기간 고려, 2년('22-'23년)에 걸쳐 권고기준 단계적 상향('22년은 1인당 최소 800만원 이상, '23년은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관련 지침(「아동분야 사업안내」)을 통하여 2017년 1인당 최소 500만원, 2022년에는 1인당 최소 800만원, 2023년 이후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한 바 있음.

- 현재의 기준(1인당 1,000만원 이상)은 2023년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통하여,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발표 시점(2024. 6.) 전에 결정된 것임.

< 2020 ~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현황 >

(단위: 만원)

시·도	자립정착금 1인당 지급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서울	500	500	1,000	1,500	2,000	2,000
부산	500	600	700	1,000	1,000	1,200
대구	500	500	800	1,000	1,000	1,000

인천	800	800	800	1,000	1,000	1,000
광주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대전	500	500	800	1,500	1,500	1,500
울산	500	500	500	1,000	1,000	1,000
세종	500	500	500	800	1,000	1,000
경기	500	1,000	1,500	1,500	1,500	1,500
강원	500	500	500	1,000	1,000	1,000
충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충남	500	500	500	1,000	1,000	1,000
전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전남	500	500	1,000	1,000	1,000	1,000
경북	500	500	500	1,000	1,000	1,000
경남	500	500	500	1,000	1,200	1,500
제주	500	500	500	1,500	1,500	1,500

* 서울: 22년부터 2년에 걸쳐 500백만원씩 분할 지급

* 경기: 22년부터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씩 분할 지급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급현황을 살펴 보면, 서울시는 2,000만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고, 경기도와 대전시, 경남과 제주도가 1,500만원, 부산은 1,200만원, 그 외 시·도는 권고 수준인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현재 모든 지자체가 보건복지부 권고 금액인 1,000만원 이상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 편차가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 장기 추적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8조의2제1항).

□ 현재 자립지원 업무는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 자립준비도 점검, 보호종료 예정일 1개월 전 자립수당 등 안내 및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등 최종 자립준비상황 점검에 이어 보호종료 후에는 5년 간 연 1회 이상 자립지원 전담인력과 대면 및 유선 연락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자립지원 업무 흐름도 >

주체별 역할 및 자립지원업무 흐름도(안)				
	만15세~보호종료 전	보호종료 3개월 전	보호종료 1개월 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가정외 보호기관	-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 자립지원 프로그램(표준화 프로그램 포함) 제공	-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자립준비도 점검 (자립준비도점검척도) - 보호종료 여부 결정 하여 시군구에 보호조치 및 종료(퇴소)신청서 제출 - 보호종료 점검회의 개최 (전담기관 참석요청)	- 보호종료 점검회의 개최 완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수당 신청 지원	- 사후관리 업무 협조 필수 (보호종료 직후 1년간 집중 협조 포함)
시군구	- 보호조치 결정 - 양육상황 점검 - (필요시) 사례관리위원회 보호조치 변경 결정	- 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내역 안내 (아동성명, 연령, 입소 연월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정보 등) - *15세~17세 조기종료대상자의 경우* (타법상 보호시설 입소, 조기입업진학 사유) - 18세 도래 3개월 전 전담기관에 사후관리 의뢰	-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료 결정 직후 전담기관에 보호종료 내역 안내 - 사후관리 계획서 등 의사 확보 확인 - 자립수당, 정착금 신청 확인	- 사후관리 업무(연락두절) 협조 - 사후관리 대상자 전출입 명단 안내 - 사후관리 실시 여부 확인
전담기관		- 보호종료 신청내역 확인 - 담당자(전담인력) 지정 - 보호종료 점검회의 참석	-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동의서 확보 - 보호종료 3주 전까지 시군구 제출	-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참고)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연령도래(18세) 또는 연장종료자 모두 위 흐름도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자료: 보건복지부

□ 현재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과정에서 위기 상황이 확인될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일상생활, 주거, 의료, 교육, 학업, 법률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 자립상황 점검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경제활동 여부, 건강검진 수검률이나 미충족 의료 경험률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다만, 추적조사 기간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와 이로 인한 예산 소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2026년부터 고위험 자립준비청년 대상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통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매뉴얼 개정 및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립지원 실태조사와 자립지원 내용을 연계하고 있으며, 자립수당은 정

책적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왔고 매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급 수준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며, 자립정착금은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준을 준수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아울러, 자립지원 종료 대상자 추적조사 실시에 대하여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기존 지원 제도의 효과 등을 검토하고 정책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추적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장기간 추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간 지속적인 연락을 수행하도록 상시적 인력 채용·훈련 및 대상군 관리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입장임.

그 외, 재정경제부는 자립정착금이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최소 지급 금액을 명시할 경우 지방 이양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를 위하여 자립지원 종료 시 장기 추적조사에 대한 사전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illegible]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법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응급조치¹⁹⁾ 또는 긴급임시조치²⁰⁾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²¹⁾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및 ③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에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혹은 적합한 위탁가정 등에 일시 보호하게 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6항).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입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입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1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 ② ~ ⑩ (생략)
- 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입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입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입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입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21) 제15조(응급조치·긴급입시조치 후 입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입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입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4. 12. 20.>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입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입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입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입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입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입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2022년 1,153건, 2023년 1,431건, 2024년 1,575건의 일시 보호조치가 행해진 바 있음.

< 일시 보호조치 현황 >

(단위: 건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시보호조치 건수	1,153	1,431	1,575

자료: 보건복지부

< 2024 ‘아동 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 즉각 분리 >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친족보호	183	(11.6)
	가정위탁	14	(0.9)
	시설입소	1,378	(87.5)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0	(0.0)
계		1,575	(100.0)

< 2023 ‘아동 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 즉각 분리 >

(단위: 건,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친족보호	218	(15.2)
	가정위탁	25	(1.8)
	시설입소	1,186	(82.9)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2	(0.1)
계		1,431	(100.0)

< 2022 ‘아동 학대 주요 통계’ 중 피해아동 즉각 분리 >

(단위: 건,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친족보호	132	(11.4)
	가정위탁	23	(2.0)
	시설입소	991	(85.9)
	입양	0	(0.0)
	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입소	7	(0.6)
계		1,153	(100.0)

출처: 2022, 2023, 2024 「아동 학대 주요통계」

- 한편,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형제 중 1명이 일시보호조치되는 경우 다른 1명은 원가정에 남을 수 있어,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이에 개정안과 같이 반복적 학대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일시보호조치 대상을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가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모든 아동’으로 하여, 일시보호조치의 기준을 아동학대 행위자로 볼 수 있는 ‘보호자’로 변경하고, 해당 보호자가 양육하고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아동 학대 예방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보호자’는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가정 내에서 보호자인 부와 모가 각각 1회씩 신고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보호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가정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자립지원 내용에 법률·금융·경제 등 교육 포함 등(김미애
의원안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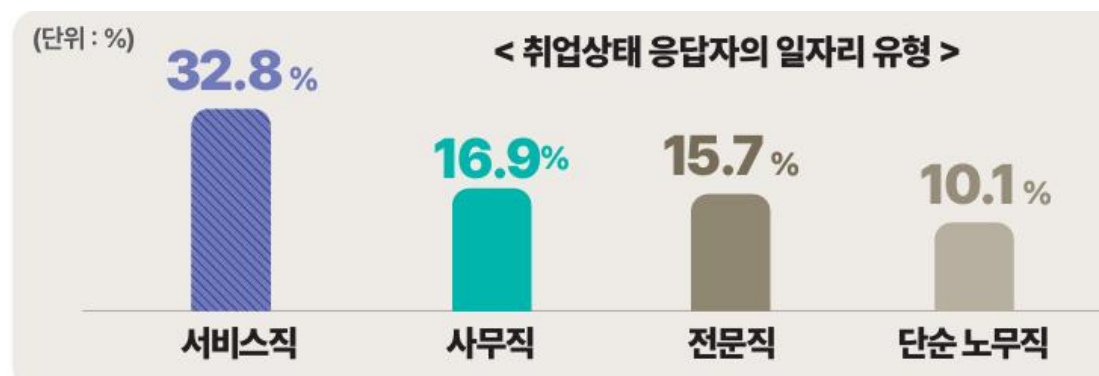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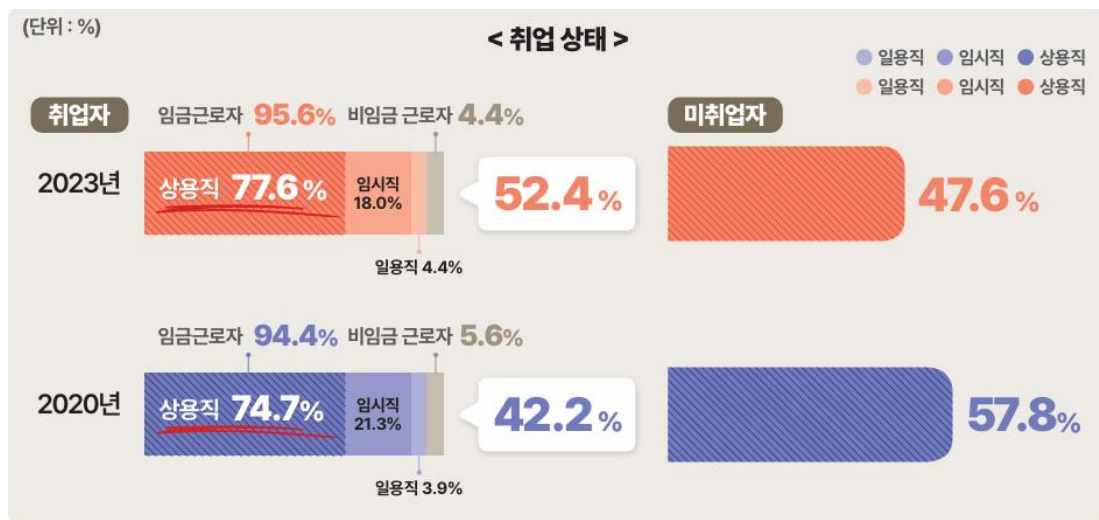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체화하고(안 제38조제1항제1호), 자립지원을 위한 조치로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u>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u> 등의 지원 1의2. (생략) <u><신설></u> 2. ~ 6. (생략) ② · ③ (생략)	제38조(자립지원) ① ----- ----- ----- ----- ----- 1. ----- <u>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u>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자립을 위한 <u>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u>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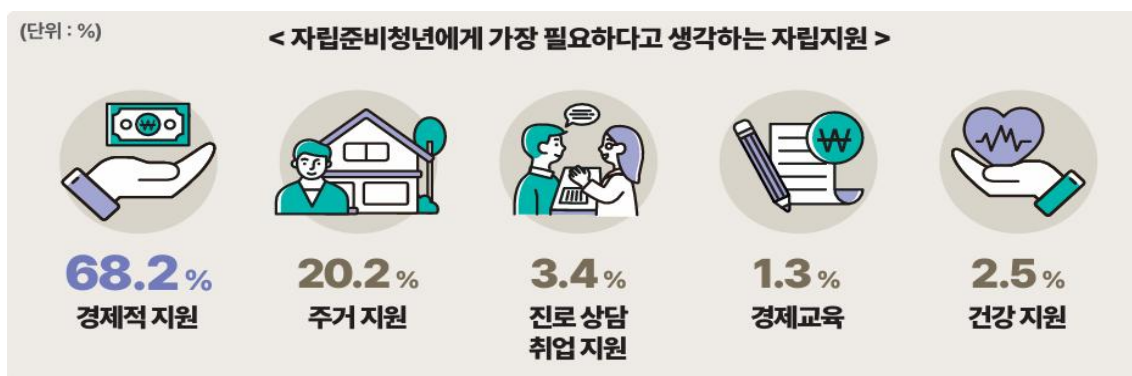
나. 주요 검토 사항

- 「아동복지법」 제38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바,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고용률은 52.4%로 2020년 실태조사 때의 42.2%에 비하여 10.2%p 상승하였으나 20~29세 청년 고용률(61.3%)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일자리 유형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아울러, 2025년 5월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 30,400건 중 20~30대 비중이 22,837건으로 75.1%를 차지하는 가운데²²⁾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024년 자립지원전담기관²³⁾을 자체 조사한 결과 자립준비청년 중 전세사기 등 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도 49건으로 집계되었고,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립지원’ 내용에도 경제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립지원 내용 중 ‘교육’을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보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활성화 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적절하다고 보임.

□ 특히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지원으로 일 경험 기회 제공,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제공,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이 언급되기도 하였음.

2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2025. 6. 26. 현안보고

23)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취업 지원 응답 >

(단위: 명, %)

구분	1순위
진로탐색 기회 제공	858(17.1)
일 경험 기회 제공	1,220(24.2)
취업상담, 취업정보 제공	778(15.5)
직업훈련 지원	594(11.8)
구직의욕, 자신감 고취	287(5.7)
사업주·청년 고용지원금 제공	930(18.5)
해외취업 지원	328(6.5)
기타	37(0.7)

출처: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 한편, 현재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하여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법률 및 권익보장, 일자리, 경제(기초생활 지원, 재정관리)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법률 지원 및 경제·금융교육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자립지원 통합사례 관리 분야별²⁴⁾ 지원 실적('25.1월~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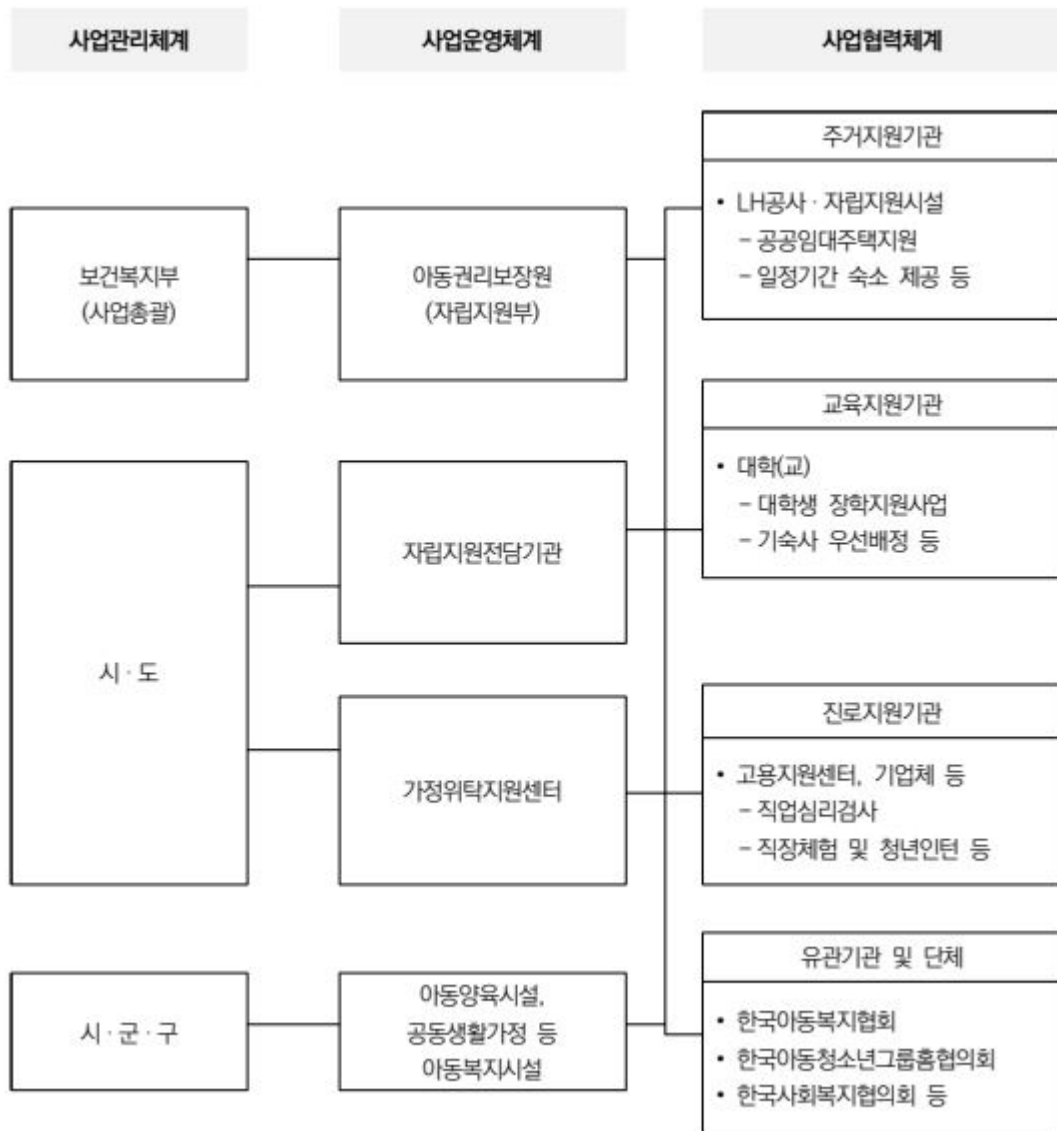
	건수	금액(백만원)
경제 (기초생활 지원, 재정 관리)	11,416	2,485
일자리 (취·창업, 고용유지)	2,458	253
법률 및 권익보장	280	32

※ '25.3분기 기준, 일자리, 경제, 법률·권익보장 분야에 대해 총 2,770백만원, 14,154건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된 17개 시·도별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등을 지원 중이며, 온라인 플랫폼인 '자립정보ON'에서 공공·민간 자립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자립지원 사업 전달 체계 중 '진로지원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어 있음.

24) 경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자리, 보육 및 교육, 관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의 분야로 나뉨.

< 자립지원 사업 전달체계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 다만, 현행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에는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대학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회균등전형 제공 등 보다 넓은 범위의 교육이 포함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금융·경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변경할 경우 오히려 범위가 축소해석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금융, 경제 등 자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교육 분야를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교육’ 분야가 법률, 금융, 경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고,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 지원을 수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9. 가정위탁 활성화 홍보 영상 제작 등(이수진의원안 제24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u>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③ (생략)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 <u>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u> ----- ----- ----- -----. 1. <u>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u> 2. <u>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u> 3. <u>그 밖에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의 보호조치로서, 구체적으로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으로 나뉨.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가정위탁보호²⁵⁾: 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2. 일반가정위탁보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아동복지시설의 장(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전자문서로 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최근 3년간 가정위탁 보호조치의 현황을 보면, 일반 가정위탁 중 친인척 비율은 87% 내외이고, 친인척이 아닌 경우는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친인척 외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가정위탁 유형 >

(단위: 세대,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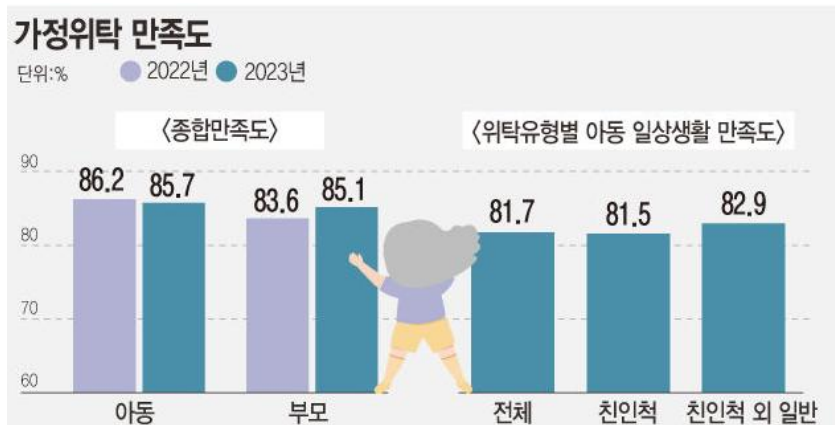
구분	계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친인척		친인척 외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22	7,574 (100.0)	9,312 (100.0)	6,617 (87.4)	8,204 (88.1)	748 (9.9)	871 (9.4)	209 (2.8)	237 (2.5)
2023	7,691 (100.0)	9,463 (100.0)	6,640 (86..3)	8,261 (87.3)	774 (10.1)	888 (9.4)	277 (3.6)	314 (3.3)
2024	7,611 (100.0)	9,343 (100.0)	6,515 (85.6)	8,090 (86.6)	787 (10.3)	895 (9.6)	309 (4.1)	358 (3.8)

자료: 보건복지부

25)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특수육구(ADHD, 우울증, 자·타해위험, 폭력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 등을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로 하여금 보호하게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보육교사·초중등교사·의료인·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질 것을 선정 요건 중의 하나로 함(보건복지부, 『2025 아동분야 사업 안내』).

- 한편, 「2023년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감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 만족도 측면에서 친인척 위탁가정(81.5%)보다 일반 위탁가정(82.9%)의 아동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²⁶⁾.

<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 보고 >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가정위탁 만족도 조사 보고서」

-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옥외광고, 유튜브, 엘리베이터 광고 등 매체를 통해 가정위탁 홍보 업무를 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②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⑥ 보장원은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지역 간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26)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년부터 2029년까지)에서도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 체계로 개편하고, 위탁가정 지원과 전문위탁가정 확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함.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한 가정위탁 홍보 현황 (2023~2025) >

구분	홍보매체	세부내용	홍보건수 (예) 송출 건수 등)	비고
2023	옥외 광고 현수막 (205개 지자체)	가정위탁보호제도 확산 및 위탁부모 발굴 활성화 현수막 게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따뜻하게 품어줄 위탁가정 모집-	509회 게시	-
	유튜브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미쳤어? 어디 남의 자식을 키워' 외 3건-	- 약 50만 뷰 - 좋아요 6천 건	-
	휴대폰 어플광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배너광고 송출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 메인배너 클릭 7,580회 - 띠 배너 9,871회	-
2024	유튜브	가정위탁 홍보영상 제작(부모편/아동편) 및 송출 *24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금상 수상 - '가정위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 363만 뷰 - 좋아요 3.5만 건	-
	옥외 광고 전광판	가정위탁 홍보영상 송출 - '미쳤어? 어디 남의 자식을 키워' ('23년 제작 외 1건)-	약 3,000회 송출	-
	BGF리테일 CU POS기 ²⁷⁾	가정위탁 홍보영상 송출(아동편)	약 18,458개 점포 내 영상 송출	후원
2025	엘리베이터 광고 (전국)	가정위탁 홍보영상(24)*(부모편/아동편) 송출 *24년 대한민국 광고대상 공익광고 부문 금상 수상	6,524만 회 송출	-
	BGF리테일 CU POS기	가정위탁 홍보영상(24) 송출(아동편)	약 18,458개 점포 내 영상 송출	후원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²⁸⁾에게 배포하도록 한 현행 규정²⁹⁾에 추가하여,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그 밖에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홍보영상도 제작·배포하도록 규

27)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를 담당하는 기기

28) 「방송법」 제2조(정의)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9) 방송을 통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홍보영상 제작·배포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음.

「노인복지법」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노인학대의 위해성, 신고방법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함으로써 가정위탁에 대한 전 국민적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홍보 영상을 통한 가정위탁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예방의 방지 관련 홍보 영상과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정위탁 홍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그 밖에, 홍보영상의 범위를 가정위탁 활성화 및 아동의 복지 증진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노인복지법」은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에 관하여 제1장 총칙³⁰⁾에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강화 취지에 공감하나, 법 체계적 통일성과 아동복지 관련 인식 개선이라는 개정 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조문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0

30) 제1장 총칙 제6조(노인의 날 등)과 제6조의3(인권교육) 사이에 제6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가 위치하고 있음.